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513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513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060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국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변론 종결 2021. 9. 30.

판결 선고 2021. 11. 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가단50605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다.항 중 '2,715,111원'을 '위 나.항 기재 돈 중 2,715,111원'으로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8.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15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8.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290,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6,290,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2,715,1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중 제10행의 '76,378,024원(그 중 원금은 23,160,190원)이다'를 '76,166,590원[= 52,290,776원 + 원금 23,160,190원에 대한 2017. 4. 8.부터 2020. 2. 20.까지 연 3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875,814원{= 23,160,190원 × 35.9% × (2년 + 319/366))}]'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중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26. 접수 제2042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5. 8. 26. 접수 제2042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제1심판결 제8면 중 제13행의 '76,378,024원'을 '76,166,590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의 다.항 중 '2,715,111원'은 '위 나.항 기재 돈 중 2,715,111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평호

판사김혜진

판사이선희

별지